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시행'22. 1. 13.)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지방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총괄과-1296(2021. 4. 16.)]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사항 이행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용어 삭제 (안 제2조제1호)

나.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후생복지사업 삭제 (안 제7조제6호)

다.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안 제9조제4항)

라. 군의회 의장과의 통합운영 조항 신설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미래전략담당관-3831(2021. 11. 19.)]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8280(2021. 11. 18.)]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21. 11. 23. ~ 12. 13.)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 성주군의회 의원”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한다.

제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후생복지담당”을 “교육후생담당”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성주군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군수는 성주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소속 공무원”이란 국내 파견 및 성주군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 성주군의회 의원을 말한다.	1. ---------- 및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담당으로 한다.	④ ----------교육후생담당------.
<신 설>	제14조(성주군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군수는 성주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참고1 관련법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총무과 교육후생담당 조 기 인